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 부결 처분 취소

판시사항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신기능장해 및 좌반신 부전마비의 장해를 입고 연탄불을 갈다가 화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질적 정신기능장해 및 좌반신 부전마비가 초래되었고, 그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갈지 않아도 될 연탄불을 갈다가 옷에 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정신적 장해 및 좌반신 부전마비로 인하여 인화된 불을 효과적으로 끄지 못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26. 97누16091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 8. 29.
선고 97누16091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차○○은 소외 주식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신기능장해 및 좌반신 부전마비의 장해를 입고 연탄불을 갈다가 화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 ○○판지 공업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하던 중 1991. 7. 8. 19: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원지를 운반하던 중 원지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송용 레일에 머리를 부딪쳐 우측 두정부 뇌실질내 출혈, 좌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을 받다가 1993. 9. 13. 치료를 종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 등급 제5급 8호의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특히 경미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1995. 1. 2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탄 1동 소재 위 망인의 집 부엌에서 연탄불을 갈다가 연탄불이 옷에 인화되어 3도의 전신화상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1993. 9. 13. 치료 종결 당시 의식은 명료하나 전신기능의 이상 및 좌반신 부전마비 등을 보였고, 좌두정부 뇌연화, 뇌수두증 등의 소견이 있었으며, 기질적 성격 장해로 인하여 의미없는 웃음을 보이고, 매사를 의심하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으로 음식물 섭취, 배뇨, 배변 등의 단순한 일상 생활 외 일반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위 망인은 치료 종결 후에도 식품가게에서 가격을 아무렇게나 지불하고 빵, 음료수 등을 사먹거나 자신의 옷, 손에 침을 뱉고, 대소변을 아무곳에서 보거나 도로에서 차를 가로막고 서서 비켜주지 않거나, 한겨울에

신발을 벗은 채 맨발로 거리를 걸어다니거나 집을 찾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으로 점점 정신적 장해가 악화된 사실.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 4시간 전에 위 부엌의 연탄불을 갈아 놓았으므로 위 사고 당시에는 연탄불을 갈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기질적 정신기능장해 및 좌반신 부전마비가 초래되었고, 그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갈지 않아도 될 연탄불을 갈다가 옷에 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정신적 장해 및 좌반신 부전마비로 인하여 인화된 불을 효과적으로 끄지 못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된다. ■■■